



# 부산남구공보

제 1255호 2023.11.1.(수)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 조 례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0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1호  
[부산광역시 남구 맨날걷기 활성화 조례] ..... 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8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3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10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4호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5호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 19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8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9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9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8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91호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32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9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공 람										
--------	--	--	--	--	--	--	--	--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0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제5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16조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지

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 중 출산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별표 5 중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 일수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1호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에게 적용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3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침해,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

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지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3. 장애인범죄 피해자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 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

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4호

###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헌혈자 예우 및 헌혈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채용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4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헌혈센터·헌혈버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공공 장소
2. 구 산하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5조(헌혈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해 구민에게 헌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4. 그 밖에 헌혈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 제6조(헌혈자에 대한 예우·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포상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한 헌혈자 홍보
4.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

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추천한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행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현행 장려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5호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부산남구사랑상품권”을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6호

##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②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배심원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배심원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 회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야 한다.

제14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배심원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8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업무  
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  
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89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를 “심신장애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2항 전단 중 “당사자”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9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나.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91호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10월 12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9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도시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중 “국민주택기금등”을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국민주택기금등”을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하고 “특별회계”를 “이 회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